

문서분류	업무기준
운용부서	휴게시설처
등록번호	QMS - 0151

KOREA
EXPRESSWAY
CORPORATION

휴게시설 업무기준

2016. 11. 25 제정
2018. 10. 19 개정

제36조(장애인 편의시설)

① 운영자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물품 및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, 세부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비치품목 : 목발, 휠체어, 보행기, 유모차 등
2. 편의물품 보관함은 접근성,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3. 운영자는 일 1회 이상 편의물품의 청결상태,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, 미비사항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.
4. 운영자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물품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성명,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, 필요 시 도움벨, 인터폰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자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휴게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세부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운영자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인적지원 서비스 요청 시 화장실 이용, 음식주문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2. 총괄부서의 장은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휴게소 연락처를 공사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선 전후 편의시설 예시 >

개선 전 (관리미흡, 관리자 연락처 ×)	개선 후	
	편의시설 정비	관리자 연락처 ○
		